

2026년 반도체 소부장기업 실증(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변경)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반도체 장비 확보가 어려운 관내 반도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나노기술원 연계 반도체 실증(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 3. 17.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반도체 소부장기업 실증(시제품 제작) 지원
- 사업목적: 관내 반도체 소부장기업 개발 지원을 통한 반도체 산업 육성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026. 10. 31.(토), 6개월 내외
- 지원대상: 화성시 관내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화성시 소재 필수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란 웨이퍼 제조에서부터 노광, 식각, 증착, 세정, 패키징 등 전·후공정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 지원규모: 2개사, 기업당 40,000천원
 - 진흥원 지원금: 40,000천원 ※부가가치세 제외함
 - 기업 자부담금: 진흥원 지원금의 25%(10,000천원) 이상 ※자부담은 현금만 인정함
- 지원내용: 관내 반도체 소부장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붙임 2. 한국나노기술원 실증 장비지원 목록 내 장비 활용 必
 - 기술성숙도(TRL) 4~7단계 기술개발 과제

<기술성숙도 단계표>

구분	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8	TRL9
내용	기본원리	개념정립	개념검증	시작품		시제품	실용화	실용화	양산
	기초이론 정립	기술개념 정립	특허출원/기본성능 검증	설계제작	성능평가	설계제작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시제품 인증	시판/시판후 연구

□ 지원항목

○ 비목에 대한 필요 증빙자료는 붙임 4. 화성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지원항목(비목)	세부내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기업 소속 인력이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월 급여 및 4대 보험료 등 비용 <p>※회사대표자가 과제에 직접 참여할 경우, 지원금으로 대표자 인건비 산정 불가 ※동일인력이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타 사업을 포함한 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p>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p>※양산용 재료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 사용 불가</p>
시험·평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험, 분석, 평가 비용 <p>※사업기간 내 인증서 발행 필수</p>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p>※사업기간 내 출원 필수 ※해외출원의 경우 PCT한정 사용 가능 ※등록 유지비용 사용 불가</p>
광고선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제품(서비스)이나 참여기업의 홈페이지, 영상,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전문가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초빙 및 자문 비용 • 기술 및 연구 관련 전문가 자문 비용 <p>※참여기업 및 참여기관 인력 대상 지급 불가</p>
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 위탁비용 • 시제품 설계(CAD) 및 목업, 금형, 설계비용 •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설계비용
회계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회계정산 비용 <p>※진흥원 지정위탁 회계법인에서 정산 필수, 수수료는 확정 시 별도 공지함</p>

※사업비 총액 대비 인건비는 20%,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전문가 활용비는 10%, 위탁사업비는 40%로 제한함

□ 추진일정



※향후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결과평가 및 기술세미나에 필히 참여해야 함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이며, 신청서식 내 동의 확인 必)

◆ **모집개요**

□ **모집대상:** 화성시 관내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화성시 소재 필수

□ **모집기간:** 2026. 3. 17.(화)~4. 1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서 등 제출서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동일 지원내용의 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과제에 대한 기 수혜한 이력이 있거나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사업기간 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 정부 및 지역 지원사업 참여 제재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신청 불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기타 화성산업진흥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제한 대상**

- 중복수혜 제한: 2026년 진흥원 사업 중 중복수혜 불가한 사업
 - 해당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향후 진행하는 하기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연번	사업명	연번	사업명
1	공급망 확대 사업화 지원(R&D)	4	대중소 동반성장 지원
2	AI 전환(AX) 기술개발 지원	5	디지털 가속성장 지원사업
3	AI 기술 사업화 지원	6	반도체 소부장기업 실증 지원 (장비사용료)

※6개 이외의 진흥원 사업에 대한 중복수혜 관련 문의는 담당자별 별도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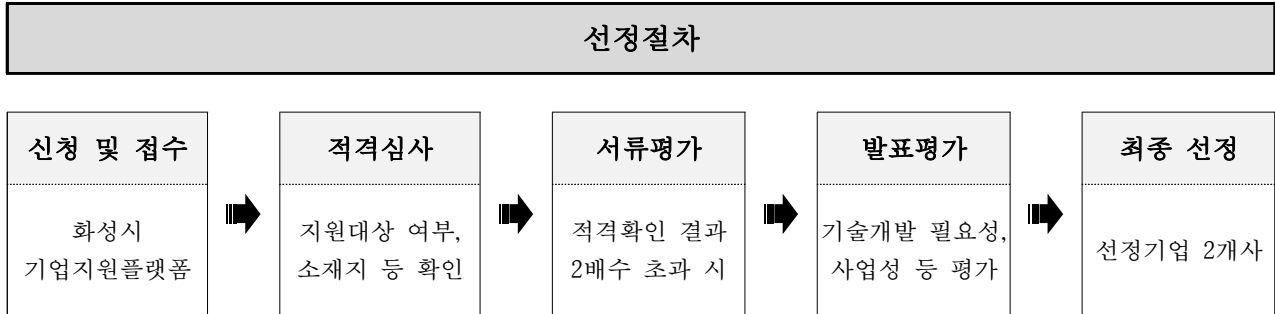
□ 제출서류

구분	목 록	비고
지정 양식 작성 후 제출	2026년 반도체 소부장기업 실증(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신청서	
	2026년 반도체 소부장기업 실증(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사업 계획서	
	2026년 반도체 소부장기업 실증(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계획서	
	2026년 반도체 소부장기업 실증(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위탁 사업비 집행계획서	
	2026년 반도체 소부장기업 실증(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신청 기업 현황	
	신청기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2026년 반도체 소부장기업 실증(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필수 제출서류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공고 게시일 이후 유효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또는 주업종 코드 확인서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주업종 코드 확인서의 경우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 조회 화면 제출	제조업 영위 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화성시 소재 증빙서류 택1
	공장등록증 ※공고 게시일 이후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공고 게시일 이후 유효한 경우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포함하여 최근 2개년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 (단, 2025년 재무제표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제출 가능함) ※2년 미만 기업은 조회가능한 기간까지 제출	'26. 3. 31.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 게시일 이후 발급분 제출 필수	

◆ 선정 및 평가

□ 선정 방식 및 기준

○ (선정방식)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기준) 서류평가는 기업현황, 과제 추진계획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발표평가는 기술개발의 필요성, 사업성 및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실시함
- 서류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상위항목(기업평가> 과제 추진 계획평가> 사업성 및 기대효과)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서류 평가표

항목	평가지표	배점
적격/부적격	• 소재지, 참여제한,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 여부 판단	-
기업평가	• 기업 재무, 조직, 과제수행 실적 등 현황	30
	• 보유 기술 수준 및 시장분석 충실성	
과제 추진 계획평가	• 과제의 사업화 현실성	15
	• 시제품 개발·제작 목표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20
사업성 및 기대효과	• 지원 과제의 사업화 가능성 정도	15
	• 고용 및 매출 증대 기대 정도	20
합 계		100

- 발표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상위항목(시제품 개발 및 제작 필요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기술개발 성숙도> 사업계획 구체성> 사업성 및 기대효과)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발표 평가표

항목	평가지표	배점
시제품 개발 및 제작 필요성	• 과제 관련 논문·특허 등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분석 충실성	20
	• 시제품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사전 준비 완성도	
사업목표의 적절성	• 시제품 제작 및 단계별 목표의 현실성	20
	• 사업예산, 인력 등 산출근거 명확도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 성숙도	•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 보유 여부	20
	• 과제 관련 연구인력, 인프라 등의 과제 추진 여건 성숙도	
사업계획 구체성	• 타 과제와의 차별성(사업목적/기술분야/추진방법 등)	10
사업성 및 기대효과	• 사업성, 매출 등 수익화 가능성	30
	• 사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 가능성	
	• 기업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합 계		100

□ **적격심사: 중소·중견기업 여부, 소재지 등 확인**

○ (부적격 대상) 기업이 최근 2년간(신청일 기준) 연속,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 조희가능한 기간까지 제출

<2026. 3. 31. 이전 신청하는 경우>

구분	유동비율		부채비율		지원여부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A기업	43%	50%	300%	250%	X
B기업	57%	52%	520%	500%	X
C기업	43%	53%	480%	550%	O
D기업	57%	40%	520%	480%	O

<2026. 3. 31. 이후 신청하는 경우>

구분	유동비율		부채비율		지원여부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A기업	43%	50%	300%	250%	X
B기업	57%	52%	520%	500%	X
C기업	43%	53%	480%	550%	O
D기업	57%	40%	520%	480%	O

※전년도 재무제표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제출 가능함

□ 서류평가

- (평가방식) 외부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선정
- (평가일정) 접수 마감 이후 1주 내외 소요
- (선정기준)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
 -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가능함
- (결과공고)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알림마당-공고 게시판에 공고

□ 발표평가

- (평가방식) 외부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분야별 최종 2개사 선정
- (평가일정)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서류평가 결과 공고 시 별도 안내
- (평가시간) 기업당 총 15분(발표 및 질의) 내외 부여
- (선정기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과제(2개사) 및 예비과제(1개사) 선정
- (결과공고) 평가 후 2주 내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알림마당-공고 게시판에 공고

◆ 향후일정

□ 협약체결: 최종 선정기업 대상 사업협약 체결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2026. 11. 30.(월), 약 7개월

□ 지원금 지급: 지원금 교부신청 절차 추진 및 지원금 지급

- (지원방식)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조건에 따른 100% 선 지급, 사후 정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기업 자부담으로 하며 사업비 포함 불가
- (유의사항) 기업 자부담금만 입금되어 있는 사업비 통장에 지급하며, 협약 체결일보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자비사용 후 지원금액에서 공제 가능

□ 지원금 정산: 진흥원 지정 회계법인에 따른 정산

○ (정산기간) 협약종료 이후 1주 이내 정산 실시

○ (유의사항)

-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추진 및 승인금액 확정, 불인정 금액 및 미사용액은 환수됨
- *외부 회계법인 정산 위탁비용은 지원금 내 계상(약 45만원)하여 정산 처리
- 총 사업비(지원금 및 자부담금)에 대해 정산 불인정 및 잔액은 사업비 비율에 따라 분배

◆ **유의사항**

- 제출한 일체 서류 및 물품은 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음
- 참여기업은 동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참여기업에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결과 통보 또는 협약 이후 일방적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여기업은 향후 성과보고서, 결과물, 설문조사, 실적 제출 등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 (재)화성산업진흥원 공급망지원팀(☐ se20@hsbiz.or.kr, ☎ 031-278-4388)

(재)화성산업진흥원장